

부설연구소규정

제 정: 2012.12.12.(이사회 승인)
최근개정: 2022.08.25.(이사회 승인)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한국철도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 부설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칭함), 영문으로는 "The Korean for Society Railway-Research Center, KSR-RC(약칭 “KSR-RC”칭함)"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52조에 명시된 학회 부설연구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연구소는 학회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학회 정관 제4조①항4호 및 ②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,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철도발전을 위한 정책, 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연구
2. 정부, 학계, 공공단체, 연구기관, 산업체 및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된 연구, 용역 및 관리
3.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

제5조 (운영지침 등) 연구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의 세부사항은 연구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 (기구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연구소장 1명
2. 자문위원 약간 명
3. 전문 및 객원연구원 약간 명
4.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약간 명

제7조 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 학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 (연구원)

- ① 본 연구소의 전문 및 객원 연구원은 연구소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철도전문분야 등의 박사 및 석사 학위소지자 또는 기술사자격소지자로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해당연구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.
- ②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은 연구소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박사 및 석사 학위소지자와 기술사자격소지자로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해당연구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9조 (연구소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연구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단, 연구소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 (연구소운영위원회의)

- ① 연구소운영위원회의(이하 “위원회의”라 함)는 재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
 2. 사업계획 및 예산
 3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 (보고) 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, 예산,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이사회 및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13조 (개정)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.

부칙 (2012.12.1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2.16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4.18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9.8.19.)

제1조 (개정일)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(이사회 승인) 이다.

제2조 (시행일) 위 개정일(2019.8.19.)에도 불구하고,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(안)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2019.9.6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8.25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